

# 식품의약품안전처

명확한  
국민건강을 위한  
정부 3.0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의약품 시판 후 조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[타이제사이클린, 단일제, 주사제]

1. 우리 처에서는 「약사법」 제32조에 따른 재심사 품목인 한국화이자제약(주)의 “타이가실주”의 시판 후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“타이제사이클린” (단일제, 주사제)의 허가사항 변경(안)을 마련하고 의견조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.

2. 위 호와 관련한 재심사 결과 등을 토대로 「약사법」 제76조제1항 단서규정 및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지시 하니, 변경지시 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의 방법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품목허가(신고)증 원본 뒷면(변경 및 처분사항 등)에 다음과 같이 기재할 것

변경 및 처분 사항 등	
연 월 일	내 용
2016.6.11	사용상의 주의사항 (의약품안전평가과- 호, 2016.5.11)
↑	↑
변경일자	변경지시 해당항목 변경지시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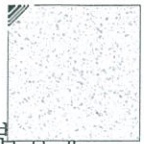
※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별도로 설정된 첨가제를 함유한 품목의 경우 「의약품의 품목허가· 신고· 심사 규정」 제17조제1항에 따라 최신의 안전성 관련사항이 모두 기재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관리할 것

나. 품목허가(신고)증 원본에 변경 지시한 내용(사용상의 주의사항)을 첨부한 후 자체 보관· 관리할 것

다. 이미 제조· 수입된 의약품 중 변경지시일 이후 출고되는 모든 제품은 별도의 변경내용(변경대비문서 또는 추가사항 안내쪽지 등과 필요시 새로운 제품 설명서도 가능)을 추가 첨부(부착)하여 유통할 것

라. 이미 유통 중인 제품설명서(포장, 첨부문서 등)에 대하여는 당해 품목의 공급 업소(도매상, 병·의원 및 약국 등)에 변경내용에 대한 정보를 통보하고 이를 해당업체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

3.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처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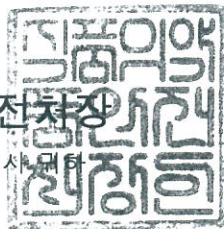


4. 참고로, 동 기간 내에 상기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붙임 자료는 「식약처 홈페이지(<http://www.mfds.go.kr>)」 → [분야별정보] → [의약품] → [의약품정보] → [허가사항제품정보]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변경대비표(타이제사이클린, 단일제, 주사제) 1부
- 2. 허가사항 변경지시 대상품목(타이제사이클린, 단일제, 주사제) 1부. 끝.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

수신자 한국화이자제약(주) 대표이사 귀하, (주)펜믹스 대표이사 귀하

주무관 김미경 연구관 도원임  
 의약품안전평가과장 이수정

협조자

시행 의약품안전평가과-2373 (2016. 5. 11.) 접수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심사동 216호 의약품안전평가과 / [www.mfds.go.kr](http://www.mfds.go.kr)

전화번호 043-719-2709 팩스번호 043-719-2700 / [miky1118@korea.kr](mailto:miky1118@korea.kr) / 대국민 공개